

# 간주취득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라

## 무조건 투자(?)하기(3)

글 조완석(공인회계사)

**이** 번 호에서는 지분법회계처리의 마지막으로 지분법회계와 관련해 흔하게 발생하는 실무적인 사항과 세무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우선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에 투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익을 투자회사의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지분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초 투자시점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투자제거차액)를 구해서 그 차이가 비싸게 산 경우는 영업권인 것처럼, 또는 싸게 산 경우는 부의 영업권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령 '04년 2월 9일자에 투자주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 시점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피투자회사가 투자회사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취득일자에 결산을 수행해서 대차대조표를 확정해준다면 모를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회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득일자로부터 가까운 피투자회사의 결산시점의 순자산 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간주취득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취득일의 경우는 '04년 1월 1일의 피투자회사의 결산재무제표를 사용해서 영업권 등의 가액을 구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상 취득일자로 동일자로 할 수 있는 것이다.

### 지분에 따른 간주취득일 적용법

회사들이 최초 취득한 지분율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별다른 고민 없이 간주취득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면 되나, 지분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서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일자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일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단 투자제거차액은 지분의 취득시점마다 구해서 상각해도 된다.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능 시점에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최종시점에서만 투자제거차액을 구해서 상각해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서 평가하도록 규정된 지분법평가손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는 해당연도의 손익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며, 처분손익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장부상에 계상한 지분법평가손익은 세무조정시 부인되어 유보로 관리되며, 향후에 동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시점에 추인된다. 그러므로 지분법회계처리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처리사항 보다는 투자목적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회계란 과거의 거래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일 뿐 거래자체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자들은 회사의 상황에 부합하는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후에 회계적으로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도를 고려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